

## 반론권제도의 역사적 전개

팽원수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봐서 반론권은 아직 기본적으로 정정권 내지 반박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국민이 거대화하고 독점화한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반론권의 이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곳에서도 악세스권으로서의 반론권이 법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역사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사상·신조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발달해온 이 반론권은 체계화된 인격적 보호조치로의 일단으로서 또 국민의 악세스권으로서 새롭게 재평가할 만한 가치를 지닌 권리인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동시에 신문의 자유와 편집권과의 예상되는 충돌 등 그 자체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1. 머리말

반론권 또는 반박권(right of reply, droit de reponse)은 본래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이해관계자가 그 미디어에 대해 반박문이나 정정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80년에 새로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도 바로 이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청구방법으로서의 반론권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다. 유럽 등 각 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반론권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신문 등에 의한 보도중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협의의 정정권이며 다른 하나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가 미디어에 대해 이해관계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서의 반박권이다. 그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신문 등에 실렸을 경우 그것을 정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언론기본법의정정보도청구권이나 사죄광고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후자의 경우는 보도내용에 있어서의 부실기재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에 관한 논박뿐만 아니라 신문에 실린 재판공격이나 주장 등에 관한 반론을 무료로 실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반론권은 우리에게서 언론기본법에서 정정권이 처음 규정됨으로써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생소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제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채택된 결코 새롭지 않은 권리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거대화하고 독점화된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악세스권의 하나의 형태로서 반론권을 이해하려는 바론(J. Barren)등 일부 학자들의 논의가 단순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서만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이 반론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권을 포함한 반론권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서구이외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미법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신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4년 연방최고재판소가 신문에 대한 반론권의 주장이 어떤 기사를 신고 안 신고를 결정하는 신문의 고유의 권리로서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거부한 바 있었다(Miami Herald Pub. Co. v. Tornillo, 1974).

우리나라에서도 언론기본법이 도입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이미 언론중재위를 통해 실제로 1년간에 걸쳐 적용되어 왔으나 그것이 매스·미디어에게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힘 없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구제수단으로서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간 시간을 두고 그 운영의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이 반론권은 신문 등 미디어에게 그 보도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측이 가장 반기지 않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는 구제를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미디어 측의 편집권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도록 언론자유와 보장과의 적절한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반론권 제도에 관한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반론권의 비교 연구를 위해 그것이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처음 제도되고 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더듬고 각국에 있어서의 반론권 제정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 2. 반론권의 모국-프랑스

반론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한 것은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흔히 반론권의 모국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처음 제출된 것은 프랑스대혁명 후인 공화 8년, 즉 서기 1800년 이었다. 그 당시 대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신문이 늘고 신문의 발행부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그 영향력이 강화된 한편, 신문이 비방과 공격으로 재인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처해야 할 필요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반론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당시 의회에 제출한 동법안은 명예훼손을 범한 신문에게 피해자의 반박문을 게재할 의무를 지우고 그 반박문을 실은 신문을 신문사 자신의 부담으로 3,000부 인쇄해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그 의무를 어겼을 예에는 신문사의 발간을 명하는 등 중벌을 과한다는 내용의 지나치게 가혹한 길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처럼 사상 최초로 반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고안한 문제와 법안은 결국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 이상은 1822년 3월 25일의 신문지법으로 이어져서 그 법의 제 11 조로 대략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게 했다.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반론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또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는 다음호에 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지명 또는 지정을 받은 모든 자의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에 위반한 경우는 다른 벌칙과는 상관없이 또 고발된 기사로 피해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50 프랑에서

500 프랑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반론문의)게재는 무료이며 반론은 원기사문의 2 배까지로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1835년 9월 9일의 신문지법에서 개정된 후 1881년 7월 29일의 신문지법 제 13 조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1881년 법은 1919년에 반론문의 기재형식에 관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론문의 구성요건에 관해서는 1881년 법 제 13 조는 ① (일간 또는 비밀간)신문 또는 기타의 정기간행물에서 ② 지명(nominae) 또는 지정(designee)된 자에 대해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가지의 형식적 요건을 정하였다. 「지명 또는 지정된 자」의 「지정」은 이름이 명시될 필요가 없고 목표가 된 인물이 실제로 인식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다.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지 않고 그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반론권은 일반적 · 절대적 권리로서 행사되는 것이다. 반론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라 ① 원문기사와 관계가 있을 것 ②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③ 법령이나 양속에 위배되지 말 것 ④기자의 명예를 해치지 말 것 등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권리행사의 이익, 반론의 내용 · 형식 등은 반론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881년 법은 제 13 조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제 12 조에서 「공권의 수탁자」인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정정권(droit de rectification)을 규정하여 12 조와 13 조로서 반론권에 있어 2 원적 구조를 형성케 하였다. 공무원의 정정권 규정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부정확하게 보도된 공무원의 행위에 관해 당해 공무원에게 신문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공권력의 권위를 유지케 하려던 구시대의 잔재로서 현재는 실제로 적용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프랑스의 반론권은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반론권을 하나의 제도로 확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크게 평가할 수가 있다. 이 반론권은 9세기 초 대혁명 후 프랑스의 격정적인 정치논쟁의 일반적 분위기에서 탄생하여 특히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신조 등에 대한 신문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격정의 시대는 지나고 오늘에는 그 당시와는 달리 신문이 정치적 논쟁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지고 그대신 매스 · 미디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주로 사생활의 측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거대화 한 대기업인 매스 · 미디어가 상업주의 때문에 사생활폭로 등 개인의 명예를 해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도 반론권의 행사가 이제는 전과 같은 평론이나 의견에 대한 「논쟁적 반론」보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적 착오 즉 오보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정적 반박」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최근에 나타난 반론권 제도의 새로운 전개로서 1972년에 방송을 위한 반론권이 도입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신문의 반론권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이지만 방송의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1972년 7월 3일 방송법 제 8 조로 비로소 방송에서도 반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규정은 1974년의 방송법 개정때 제 34 조로 옮겨졌으나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그 반론방송청구의 구성요건은 1975년에 공포 · 시행된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조직에 관한 법령이 세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 3. 서독의 주법과 반론권

서독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현재 각주의 주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반론권을 가장 먼저 채택한 것은 바덴주로서 1831년 12월 28일 주신문지법의 제 10 조가 반론권을 규정한 것이었다. 바덴주 신문지법은 1822년의 프랑스신문지법이 채택한 반론권 조항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같은 이념에서 반론권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4년에는 독일제국신문지법의 제 11 조가 반론권을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정기간행물에 의해 정부관저 또는 사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관련된 자는 책임편집자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은 처벌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실에 관한 주장에 따라 제한된다. 정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죄로 요구할 수 있다. 」

이 제국신문지법은 신문·잡지 등의 침해로부터 공공질서를 보호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반론문 게재거부에 대한 형사벌을 당초에 규정하였으나 그 뒤 각주법에서는 반론권의 목적을 인격권보호와 「의견형성의 자유」보장에만 두고 형사벌을 모두 폐지하였다. 서독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주가 1960년대 전반까지에 주신문지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반론권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들 주법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특징은 매스·미디어의 보도로 명예권을 침해 당한 자가 미디어의 대해 사실적 반론 즉 정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말하자면 인격권의 침해에 대항하는 권리로서의 정정권의 성격을 지닌 것이나 일부 주에서는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여하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악세스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만 각주법 사이에 차이가 있고 연방의 신문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론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1949년 이래 추진되어 온 서독의 연방신문기본법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서 반론권에 관한 문제도 그 조항의 하나로 제기되었으나 그 기본법 자체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72년에는 서독신문평의회가 반론권에 관해 언론계에서 통일된 원칙을 작성할 필요를 느껴 전문위를 구성, 검토한 결과 「반론권 취급 기준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였는데 이것은 각주간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반론권의 문제를 매스·미디어 측에서 해결케 하고자 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방송에 있어서는 연방관할하의 해외방송을 제외하고는 반론권은 각주의 주방송법과 주신문지법, 공공시설에 관한 주간협회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론은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 4. 영국의 정정제의제

영미법의 본국인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재판소를 통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반론권에 유사한 제도로서 정정제의라는 것이 1952년의 명예훼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론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법 제 4 조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사를 공표했을 경우 그 공표가 고의없이 한 것임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정정(amend)을 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조 제 5 항은 정정제외의 조건으로서 이의의 대상이 된 내용이 불복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공표한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해석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명예훼손적으로 해석될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증명하면 발행인이 정정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인은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정정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죄를 자신의 명이나 연서로 출판물에서 공표하고 그것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그 제의를 수락하고 발행인이 제의내용을 올바르게 실행하면 그 효과로서 명예훼손의 소송은 제기되지 않고 이에 제기된 것도 취하된다. 또 피해자가 그 제의를 거부해도 발행인이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하고 아울러 지체없이 정정을 제의하였음을 증명하면 소송상 완전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정제외규정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론권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공문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행인의 증명의무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반론권으로서의 정정제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의 증명의무경감 등 명예훼손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동명예훼손법의 제 7 조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신문의 면책특권(privilege)과 관련하여 반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은 피해자가 신문의 공표한 내용이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 피해자가 해명이나 반박문을 그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문에 부여되어 있는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반박문의 게재 거부가 신문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 5. 미국의 반론권

미국에서는 신문에 관해서는 플로리다, 미시시피의 두 개를 제외하고는 연방이나 기타 주에서 실정법상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방송에 있어서는 반론권에 매우 유사한 것으로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반론권 도입에의 길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각주 중에서 유일하게 신문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의 주법은 다같이 공직선거 후보자에 한하여 반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1913년에 제정된 플로리다 주법의 반론권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신문이라도 그 지면에 있어 지명후보자나 선거후보자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또는 공직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나 실책을 갖고 당해 후보자를 규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의 공직상의 경력을 공격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무료로 지면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당해신문은 그 후보자의 청구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한 반론을 반론의 원인이 된 기사가 실린 곳과 마찬가지로 눈에 의는 자리에 동종의 활자로 즉시 무료로 공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그 반론은 원인이 된 기사의 전이를 넘을 수 없다. 본 조항의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는……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미시시피주의 규정도 위의 플로리다주의 규정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론내용은 정정정과 의경의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다. 반론권을 인정한 주법은 분명히

프랑스 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플로리다 주법은 제정된 이래 한번도 적용된 일이 없었으나 1974년 미국연방최고재판소가 마이애미·헤럴드 대 토너로·쥬니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플로리다주 반론권법이 미국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위반의 법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 사건을 플로리다 주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원노조간부 패트·토너로·쥬니어가 그를 비판한 마이애미·헤럴드지의 사실 때문에 선거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로 반론권법에 따라 동지에게 무료로 그의 반론을 게재하도록 청구하였으나 신문이 그것을 거부한데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 제 1 심인 지방재판소는 마이애미·헤럴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플로리다주 반론권 규정이 미국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동지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그에 대해 플로리다주 최고재판소는 제 1 심과는 반대로 『자유언론은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으로 더욱 강화될 수는 있어도 박탈될 수는 없다』 고하고 동법이 『공중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동법이 합헌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연방최고재는 그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엎고 다시금 마이애미·헤럴드에게 승소를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승인한 법리에 의하면 미국수정헌법 제 1 조는 발행전의 뉴스와 그 편집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관한 한 정부와 인쇄매체 사이에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을 추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인쇄할 것인가 하는 「저널리스트」 한 판단의 행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신문이든 잡지이든 그것은 「합리적」 규제에 따르는 공공물이 아니다. 물론 신문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며 무책임한 경우도 있다. 또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하여 충분하고 공평한 논평을 제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정 제 1 조가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상징한 판단을 중요문제에 관한 논의가 따르는 불안전할 수 있고 또 모든 견해가 완전하게 표명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비록 신문이 플로리다법에 따라 새로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또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서 어떤 뉴스라 의견의 발표를 미루어야 하는 일이 없더라도 동법은 신문이 게재할 재료의 선택과 기사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한 결정에 있어 편집자의 기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 연방최고재의 판결은 신문에 대하여 반론문의 게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반론권법이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인데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제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시시피주의 반론권법은 명예훼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취소」 규정과 유사한 것인데 1953년에 이미 헌법재판을 얻을 기회가 있었으나 주최고재가 그것을 기피하고 반론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반론문 게재신청을 물리치게 하였다. 명예훼손에 대한 완전한 방어수단으로 「취소」(retraction) 제도가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명예훼손을 한 신문이 당해기사의 「취소」를 충분히 공정명백하게 할 경우에는 징계적 배상이 면제되고 또 일반적 배상도 완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몬타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3개 주의 「취소」 규정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문에 대해 사실에 관해 자신적 견해를 공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위스콘신의 조항도 정기간행물로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그 간행물의 책임자에게 정정이나 진실에 관한 의견공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론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파미디어에 관해서는 미국은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이 제 315 조에서 공직선거의 모든 후보에게 방송시설을 통한 반론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평등시간」(equal time)조항으로 알려진 그 규정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방송시간을 배정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은 것이다. 이 것은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서의 반론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반론의 기회를 고루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 반론권에 접근한 것이며 특히 악세스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방송에 있어서 같은 악세스권적인 반론권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이 있다. 1959년 연방통신법의 개정에서 명문화된 이 「공평의 원칙」은 공적인 중요사항(public issues)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있을 때에는 공평하게 방송시간을 제공하고 특히 쟁점이 된 문제의 찬반론쟁자들에게 꼭 같이 반론의 기회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반론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방송에 대한 악세스권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전진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967년에 「공평의 원칙」 시행을 위한 세칙으로서 개인공격과 정치논설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표했다. 그 규칙은 『공적인 쟁점에 관해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중에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의 성실성, 성격, 품위 또는 그와 같은 개인적 자질에 대해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방송국은 상당한 기간 내, 공격이 있는 지 1주일 이내에 공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① 그 방송의 일시와 방송내용의 통지 ② 그 공격의 태본 또는 테이프(그것이 없으면 정확한 요약)와 ③ 당해방송국의 시설을 통해 반론을 위한 응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공평의 원칙」은 정치·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상업광고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어 1967년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담배광고를 방송하는 방송국이 금연하도록 시청자에게 권고하는 추장에게도 같은 시간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 「공평의 원칙」에 대하여 연방최고재판소는 1969년에 이른 바 레드·라이온 방송국사건(Red Lion Broadcasting Co. v. F. C. C.)에 대한 전원일치의 판결에서 『전체로서의 국민이야말로…… 라디오라는 매체를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능하게 할 집단적인 권리(collective right)를 갖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권리이며 방송사업자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공평의 원칙」이 합헌적이라는 것을 판시했다.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을 인정한 이 판결을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와 악세스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바론 등 많은 학자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확대시킨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 것이다.

## 6. 일본의 정오권

일본에서는 1872년인 명치 6년에 제정된 신문지발행조목에서부터 비롯하여 신문의 오보나 오해로 인한 기사의 착오에 대하여 일정의 정정권을 인정해 왔다. 그 후 1874년의 신문지조례, 1882년의 신문지조례, 1886년의 신문지조례 1908년의 신문지법으로 이어지면서 한결같이 정오권이란 용어로 정정권을 규정해 왔다. 구신문법 제 17 조는

「신문지에 게재된 사항의 착오에 관여하는」 「그 사항에 관한 본인 또는 직접관계자」가 「정오 또는 정오서, 번박서의 게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게재사항에 실제로 착오가 없었을 때에도 신문에게 정정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직접관계자란 어떤 범위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신문지법이 폐지된 이후로는 일본민법 제 723 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원상회복수단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사죄광고 이외에는 신문에 대한 정정권을 규정한 것이 없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실제 신문편집면에 있어 서구 신문들과는 그 뉴스량이나 길이 · 제작과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반론권법처럼 신문에 이름이 난 사람들에게 다같이 원문기사보다 2 배나 되는 반론의 게재를 허용할 경우 신문지면이 언제나 반론문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대한 반론권의 법제화에는 많은 학자들이 반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방송법이 반론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 4 조는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지 2 주일 이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하여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판명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시설과 동등한 방송시설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의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반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반론이나 해명을 위한 방송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 자체가 사실에 관한 사항의 진실여부를 조사한 뒤 정정이나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7. 언론자율기관과 반론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이외에 신문평의회나 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언론의 자율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통해 반론권과 같은 효과를 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영국의 언론자율기관으로 1953 년에 설립된 신문평의회(The Press Council)는 63 년의 개편 이후 신문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소를 받아 그것을 처리하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평의회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문에 대한 제소를 심의한 후 재정을 내리고 그 재정문을 당해신문에 공표케 함으로써 사실상으로 피해자를 위해 정정권 행사와 같은 효과를 내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윤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문의 명예훼손에 관한 제소를 받아 그에 관한 결정문을 신문에 게재 · 공표케 하는 것도 같은 취지의 조치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의 보도내용에 관해 신문평의회에 제소코자 하는 자는 먼저 관계된 신문의 편집인에게 직접 그 보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 편집인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비로소 피해자는 신문평의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소를 받으면 평의회는 먼저 사무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편집인과 증인 등의 증언을 청취케 한 후 제소처리위원회에 회부케 하는데 동위원회는 제소된 사건을 관계증거 등에 따라 세밀히 검토한 뒤 평의회에 정식으로 권고를 낸다. 그러면 신문발행인, 기자, 일반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 합의부가 심리한 후 재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관계된 신문에게 그 재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다. 그 재정의 기준으로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지금까지의 동평의회 재정을 통해서 얻어진 일련의 원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 원리의 하나로서 사실에 관한 오보가 있을 때에 피해자가 먼저 관계 편집인에게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편집인은 적절한 정정이나 사죄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평의회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에 대한 재정문 게재요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것이나 지금까지 신문이 그 요청을 거부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영국의 BBC 방송에 1971년에 설치된 시청자나 출연자들의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불만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재정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3인으로 구성된 동위원회도 관계증거와 증언 등을 갖고 사건을 심리한 후 재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정은 영국방송협회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The Listener)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을 방송을 통해서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3) 미국에서도 최초로 언론의 자율기관으로서 전국보도평의회(The National News Council)가 설치되어 뉴스보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언론기관과 공중의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동평의회는 「20세기기금」의 연구 프로젝트에 의한 광고의 결과로 1973년에 발족한 것인데 보도 기관들에 대한 일반의 제소를 받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발족 이래 상당수의 제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영국과는 달리 동평의회 재정을 신문들이 게재·공표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보도의 정확성과 공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이 기관에 대해 신문 등 미디어 측의 반응도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론권 실현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8. 맺는 말

이상 반론권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과정과 나라마다의 특성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반론권은 그 밖에도 스웨덴,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해 왔는데 여기서는 그 중 일부 대표적인 것을 설명한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근거로 해서 반론권의 일반적인 경향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구에서 프랑스를 비롯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반론권이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영국과 같은 커먼·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국가가 반론권을 도입하고 있다.

(2) 서구제국의 반론권은 오보나 사실의 착오 등에 관한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로서의 협의의 정정권(서독법, 오스트리아법 등)과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집필한 반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반론권(프랑스법, 벨기에법, 이탈리아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3) 영국과 미국 등 커먼·로의 국가에서는 신문에 관한 한 실정법상 반론권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4) 미국에서는 신문에 대한 반론권이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 특히 그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전통적으로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플로리다와 테네시 양주만이 제정한 반론권도 그 중 플로리다법이 1974년 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해 위헌이고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빛을 잃게 되었다.

(5) 방송에 있어서는 미국은 「평등시간」, 「공평의 원칙」 등의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반론권 도입으로 크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공평의 원칙」은 1969년 연방최고재의 레드·라이언사건에 관한 판결을 통해 합헌적인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6) 방송에 관해서는 서구제국도 최근에 이르러 반론권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7) 세계적으로 봐서 반론권은 아직 기본적으로 정정권 내지 반박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국민이 거대화하고 독점화한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반론권의 이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곳에서도 악세스권으로서의 반론권이 법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상 반론권의 일반적인 경향을 요약해 보았다. 역사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사상·신조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발달해 온 이 반론권은 체계화된 인격적 보호조치의 일단으로서 또 국민의 악세스권으로서 새롭게 재평가할만한 가치를 지닌 권리인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동시에 신문의 자유와 편집권과의 예상되는 충돌 등 그 자체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반론권이 제도로써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론권이 지닌 기본적인 한계에 관한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문학박사)
- 저술 : 「비교신문학」(공저) 「악세스권의 연구」 등 논문다수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교수